

의안번호	2207953
의 퇴 인	김윤 의원
회 답 일	2025.04.
추계번호	25C0696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8조(사업)	대학병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의학계 학생의 임상교육(臨床敎育) 2. <u>지역 내 공공보건의료기관과 전공의 수련 및 의료 요원의 훈련</u> 3. 의학계 관련 연구 3의2. 의학계와 이공계[이학(理學)·공학(工學)을 말한다] 등 다른 학문과 융합에 기반을 둔 응용학문(이하 “융합의학”이라 한다)의 교육 및 연구 4. 임상연구 5. 진료사업 6.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사업 7. <u>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한 연구</u> 8. <u>지역 내 공공보건의료기관과의 협력</u> 9. <u>지역 내 의료기관에 대한 임상교수요원 등 의료인력 파견 및 지원</u> 10. 그 밖에 국민보건 향상에 필요한 사업	의무규정
2	안 제8조의2 (성과평가)	(제1항)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학병원의 원활한 의료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8조에 따른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의무규정
		(제3항)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학병원에 대한 재정지원 시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재량규정

II. 미첨부 근거규정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8조(사업)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안 제8조의2 (성과평가)	

2. 상세 사유

- 개정안은 지역 내 공공보건의료와 관련된 사업을 국립대학병원의 수행 사업으로 명시하고, 국립대학병원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도록 규정함
 -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¹⁾에 따른 교육부 소속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운영되고 있음
 - * [참고자료 1] '25년 교육부 및 보건복지부 소속 공공기관 현황
-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국립대학병원의 신규 사업 지원 및 성과평가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시점에서 구체적인 사항을 예측하기 어려워 비용추계에 한계가 있음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공공보건의료 관련 신규 사업에 대한 정부 보조액과 성과평가 수행에 따른 재정지출임
 - 그러나 개정안에 근거하여 시행될 신규 사업에 대한 구체사항을 예측하기 어렵고,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제8조제6호²⁾에 따라 일부 공공보건의료사업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 현시점에서 추가재정소요 산출이 곤란함
 - 참고로, '25년 교육부는 공공임상교수제, 임상교육훈련센터 건립 지원 등 정책사업 예산으로 269억 8,800만원을 편성함
 - * [참고자료 2] '25년 병원별 정책사업 세부내역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공공기관의 구분)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다른 법률에 따라 책임경영체제가 구축되어 있거나 기관 운영의 독립성, 자율성 확보 필요성이 높은 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은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기타공공기관의 지정기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을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책임경영체제가 구축되어 있는 기관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가.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또는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치과병원
나.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병원 또는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치과병원
2)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제8조(사업) 대학병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6.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사업

- 또한, 신규 사업에 대한 구체사항을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성과 평가 비용 역시 산출이 곤란함
 - 참고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각 부처 훈령에 따라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실적평가가 이루어지며,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공시되고 있음

□ 이에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사회비용추계과	정현수	이진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정현수	02-6788-4627	jhs@assembly.go.kr

[참고자료 1] '25년 교육부 및 보건복지부 소속 공공기관 현황

구 분	(주무기관) 기관명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복지부) 국민연금공단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교육부) 한국장학재단 (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기타 공공기관	(교육부)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강원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치과병원, 경상국립대학교병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동북아역사재단, 부산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치과병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전남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보육진흥원,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복지부) (재)한국보건의료정보원,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대구 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대한적십자사, 아동권리보장원,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재단법인 한국공공조직은행, 재단법인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재단법인 한국장기조직기증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한국 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한의약진흥원

자료: 기획재정부

[참고자료 2] '25년 병원별 정책사업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사업명	'24년 예산 (A)	'25년 예산 (B)	'24년 대비 (B-A)
종료	충남대병원 임상교육훈련센터 건립('21~'24)	4,556	-	-4,556
계속	국립대병원 공공임상교수제 지원('22~'25)	6,350	3,940	-2,410
계속	칠곡경북대병원 임상교육훈련센터 건립('22~'26)	3,916	5,80	1,164
계속	전남대병원 임상교육훈련센터 건립('22~'26)	1,000	4,172	3,172
계속	분당서울대병원 임상교육훈련센터 건립('23~'26)	3,600	8,396	4,796
계속	전북대병원 임상교육훈련센터 건립('23~'26)	3,600	2,400	-1,200
계속	양산부산대병원 임상교육훈련센터 건립('24~'27)	500	1,000	500
계속	충북대병원 임상교육훈련센터 건립('24~'27)	500	1,000	500
신규	강원대병원 임상교육훈련센터 건립('25~'28)	-	500	500
신규	경상국립대병원 임상교육훈련센터 건립('25~'28)	-	500	500
합계		24,022	26,988	5,688

자료: 교육부